

꽃다운친구들(KOCHIN) 정관

제정 : 2021 년 7 월 30 일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 본 단체의 명칭은 ‘꽃다운친구들(KOCHIN:Korea Creative Halftime Intermission for Next generation)’이라 한다.

제 2 조 (목적) 본 단체는 대안적 자기계발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자기이해와 진로발달을 위한 대안교육을 제공하며 공동체 감각을 계발하여 행복한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제 3 조 (사업) 본 단체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사업
2. 부모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사업
3.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4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 및 임원

제 5 조 (회원의 자격) 본 단체의 회원은 본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경험한 가족 구성원 또는 후원자 중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진다.

제 7 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1.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
제 8 조 (임원의 구성) 본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.

1. 상임대표 1인
2.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운영위원
3. 필요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득해 운영위원 중 1인을 공동대표로 선임
4. 감사 1인

제 9 조 (임원의 선임)

① 상임대표, 공동대표, 운영위원, 감사는 제 14 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 11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만료 직후 임원 직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에서 임원이 개선되기 전까지 해당 기간에 한해 그 임기가 임시 연장된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상임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상임대표 유고 시 공동대표가, 공동대표 또한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이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.

제 3 장 총회

제 13 조 (총회의 구성 및 개최)

-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계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상임대표 또는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소집한다.
- ③ 상임대표는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14 일 전까지 서면에 준하는 방식(유효한 이메일, 팩스, 휴대전화 문자 등)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 총회 개최 전에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5 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
- 4.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
- 5. 기타 중요사항

제 4 장 운영위원회

제 16 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
- ① 상임대표와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회 내에 사업추진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감사는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 17 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
-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한다.
- ② 정기운영위원회는 연 2 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재적운영위원 1/3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 18 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며 운영위원회 개최 전에 상임대표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장 회계 및 재정

제 19 조 (수입금)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들의 자발적 분담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
제 20 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
-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 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2 항의 보고를 위해 내부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며, 필요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.

제 21 조 (잔여재산의 처분)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
제 6 장 보칙

제 22 조 (정관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3 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4 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제정시 설립일부터, 개정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, 일반적인 관례, 내부 규정 등에 따른다.

제 3 조 설립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3년 6개월로 한다.